

#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 (임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07일  
발 의 자: 임규호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성준, 김혜지, 박강산, 박수빈, 박철성, 서준오,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최재란, 한·신 의원(17명)

### 1. 제안이유

- 최근 발생한 각종 채용 비리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공정성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가 앞장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개설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의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실태조사 등 이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1조(목적)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제2조(설치)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 제3조~제10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공직유관단체 등이 시행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과 관련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채용비리”라 한다)의 근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중 가목에 상당하는 규정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채용비리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채용 공정성 확보 관련 제도개선 지원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4. 채용비리 관련 수사의뢰·징계 등에 대한 후속조치 관리에 관한 사항
5. 채용 공정성 확보 관련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 관련 소관 국장급 공무원
3. 채용 공정성 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

며,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